

충현평생대학원 시행세칙(案)

제1장 총 칙

제1조(총칙)

충현교회 운영규정 제3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평생대학원 학칙을 운영한다.

제2조(명칭)

본원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평생대학원(이하 본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충현교회 세움위원회 아래에 둔다.

제4조(목적)

본원의 목적은 충현교회의 교육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며 모든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게 하여 참된 예수의 사람인 천국일꾼을 양성함에 있다.

제2장 조 직

제5조(부서)

본원은 학기제로 운영되는 특수목적의 교육부서이다.

제6조(조직)

본원의 관리조직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부장 1명, 부감(남/여) 2명, 처장 4명, 실행위원 및 교역자(지도 1명)로 구성한다.
2. 교육 실행 조직으로 학부를 두고 그 산하에 강좌별 강사로 구성한다. 단, 강사의 조직은 매 학기마다 변경될 수 있다.

제7조(직임)

본원의 직임은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본원을 대표하며, 그 운영을 지도·감독한다.
2. 지도교역자는 본원의 교육전반을 지도한다.
3. 부장은 해당부서를 대표하며, 그 운영을 지도 감독한다.
4. 부감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장의 지시에 따라 홍보, 문건 기안 및 작성을 실무적으로 수행한다.

5. 교무처장은 본원의 예배 및 학습 진행, 강사 지원 및 학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6. 생활지도처장은 해당부서의 학생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7. 총무처장은 해당부서의 행정, 회계 및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8. 실행위원은 각 처장의 범위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처장 업무를 지원한다.
학기별 개강 및 종강, 학사운영, 강좌별 강의실 관리, 비품관리 등의 실무를 처리한다.
9. 각 부서는 필요시 실정에 맞게 직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교사 임면

제8조(교사자격)

교사는 본원 조직 상 부장, 부감, 처장 및 실행위원을 포함하며 그 자격은 운영규정 제33조에 따른다. 강좌별 강사도 교사의 범위에 포함되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운영규정 제 33조 참조】

1. 정교사

- 1) 본교회의 세례교인으로 교사양성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교사자격 인정받은 자
- 2)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에서 당회가 인정하는 자
- 3) 본교회의 세례교인으로 본 교회가 인정하는 신학원 졸업자 또는 2년 이상 수료한 자
- 4) 본 교단 상회 교육기관에서 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임시교사

- 1) 본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정교사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2) 본교회의 교사양성부에 재학 중인 자
- 3) 본교회의 세례교인으로 대학부 및 청년부 회원으로 교사자격이 있다고 해당 부서장이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제9조(교사 및 강사의 임명)

교사임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1. 교장은 본교회의 당회장이 된다.
2. 교감은 본교회의 세움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본원의 지도교역자, 부장, 각부서 지도교역자, 남·여 부감, 처장은 당회의 동의를 얻어 당회장이 임명한다.
4. 실행위원의 임명은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강사의 임명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수행한다.

1. 본원 강사는 Pool제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1기부터 개설된 강좌의 강사를 포함하여 매 학기 강의를 수행한 강사들을 기반으로 강사 Pool에 포함한다.
2. 본원 강사는 해당 강좌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임명한다.
3. 강사는 교회 내부 강사 및 외부 강사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휴직·복직)

교사의 휴직과 복직은 다음과 같다.

1. 휴직

- 1) 연 8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때
- 2) 교사 및 강사로서 직임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3) 4회 이상 강의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2. 복직

- 1)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 2) 기타 인정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퇴임·면직)

교사의 퇴임과 면직은 다음과 같다.

1. 퇴임

- 1) 의원 사직할 때
- 2) 타교회로 진출하였을 때

2. 면직

- 1) 연 4주 이상 무단결석하였을 때
- 2)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3)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때

제4장 학 제

제12조(조직 구분)

본원은 행정부서와 교육부서로 구성되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행정부서 : 부장, 남/여 부감, 지도 교역자, 총무처, 교무처, 생활지도처, 기획처 및 실행위원
2. 교육부서 : 영성학부, 음악학부, 건강학부, 언어학부, 교양학부

제13조(학제)

1. 본원은 각 강의를 수강생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강의별로 연령별 예외적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 사전에 논의 후 수강신청에 반영할 수 있다.
2. 타 교회 교인이 등록을 원할 경우에 본교인 1인 이상 동반 등록하도록 한다.

제14조(수강신청, 취소)

수강신청과 취소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수강신청은 각 학기 개강 직전에 실시하는 별도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입학이 이루어진다.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단, 신청자는 성명, 연락처, 교적번호, 소속교구, 연령대, 수강과목을 중복 또는 또는 누락 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강생은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2. 수강생이 수료 기준이 요구하는 횟수를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미수료로 처리한다.
3. 수강생으로부터 회비는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학기 단위로 소정의 등록비를 받을 수 있다.
강좌별 교보재 구입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구매한다.

제15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매년 봄학기 and 가을학기 등 2개 학기제로 이루어지며 별도로 특강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1. 봄학기는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8 ~ 12주 범위에서 강좌별 교과에 따라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2. 가을학기는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8 ~ 12주 범위에서 강좌별 교과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3. 특강 개설은 강좌가 목적이 분명하고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학기
중 임의로 개설/운영할 수 있다.
4. 강좌 형태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대면 강좌 : 강의실 집합형
 - 비대면 강좌 : 유튜브 강좌 및 Zoom 강좌

제16조(수료 · 이수)

수료와 학점 부여는 다음과 같다.

1. 수료 : 개설 과목의 80% 이상 출석한 수강생에 수료증 수여
2. 학점 : 영성학부에 해당하는 과목을 수료한 수강생에 한하여 2학점 부여

제17조(전시회/발표회)

종강 시점이 되면 학기 중 수행한 학습의 결과물을 강좌의 특성에 따라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시회 및 발표회를 열 수 있다.

1. 전시형 발표회 : 교양학과 과목
2. 동작형 발표회 : 음악학과 강좌

제18조(징계 구분)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징계는 본교의 교사나 강사로서 이단사설을 따르거나 가르치고 비성경적이며,
교회에 해를 끼칠 때 위원회의 의뢰로 당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및 훈련

제19조(회의)

본교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각부서의 부장단 회의는 학기 중 수시로 실시한다.
2. 각부서의 교사 회의는 학기 중 필요시에 실시한다.

제6장 재 정

제20조(재정)

본교의 재정은 교회지원(보조)과 자체수입으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21조(관례)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2조(효력)

본 학칙은 당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1. 시행세칙 제정 : 2023년 4월 일